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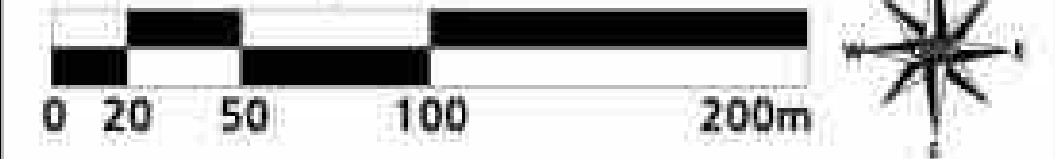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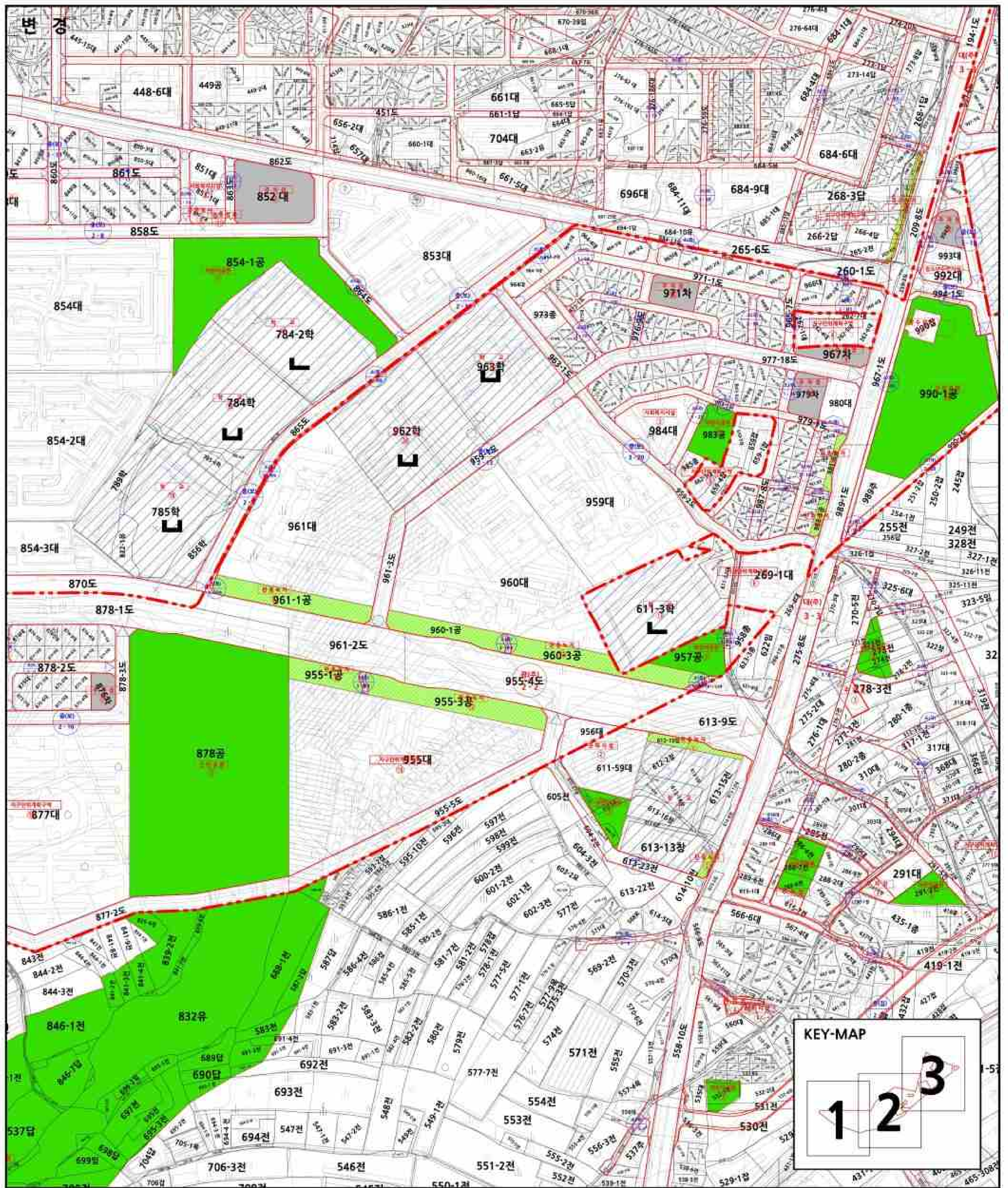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완충녹지, 경관녹지
 - 공원
 - 주차장
 - 학교
 - 도로
 - 도시계획시설
- ※ 범례 및 신설품위에 한하여 효용함

토 평 지구 (1)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Scale = 1:2,000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완충녹지, 경관녹지
- 공원
- 주차장
- 학교
- 도로
- 도시계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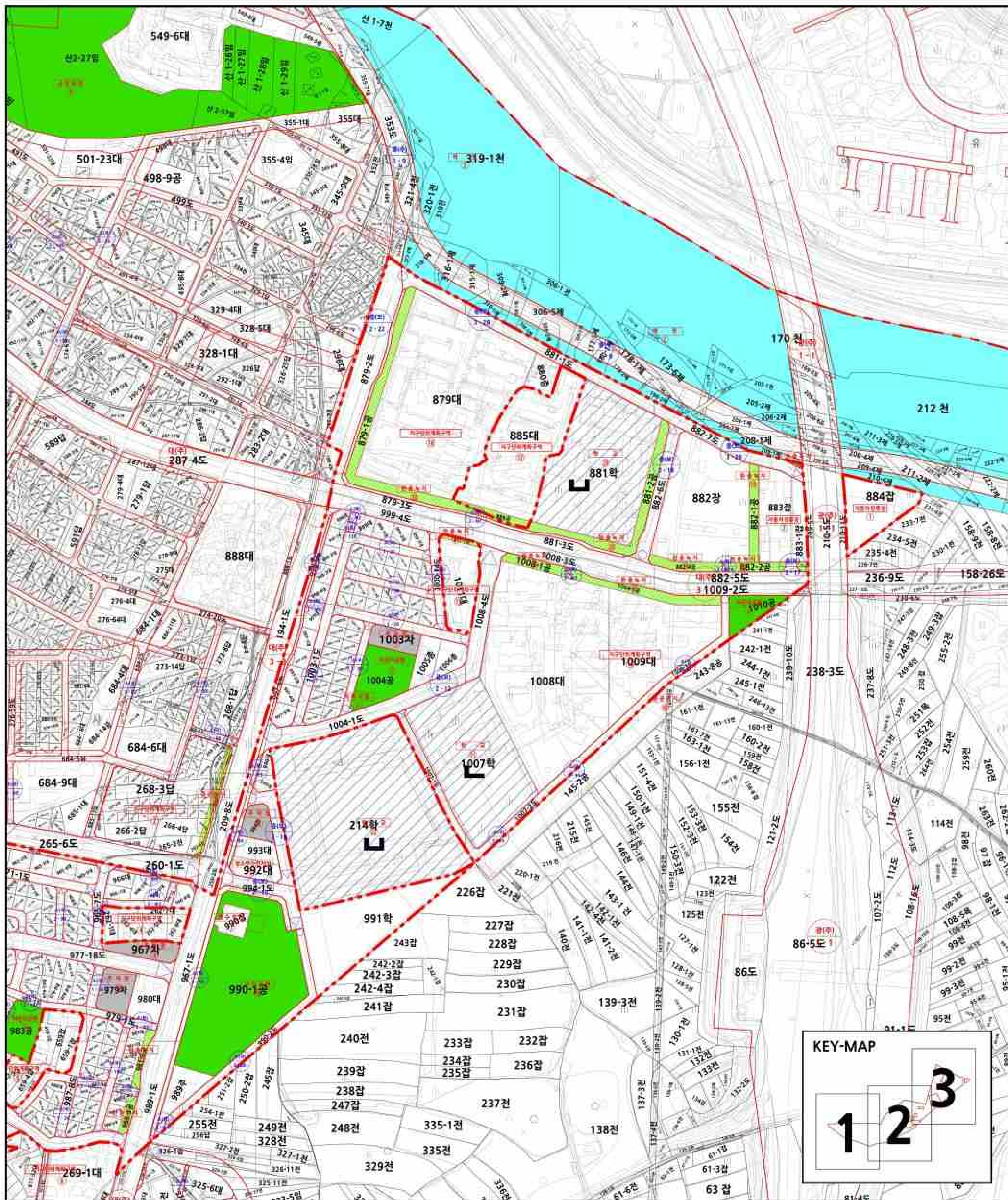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토 평 지구 (2)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Scale = 1:2,000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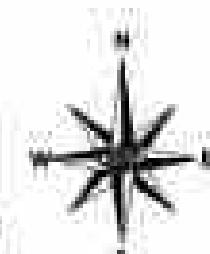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완충녹지, 경관녹지
- 공원
- 주차장
- 학교
- 도로
- 도시계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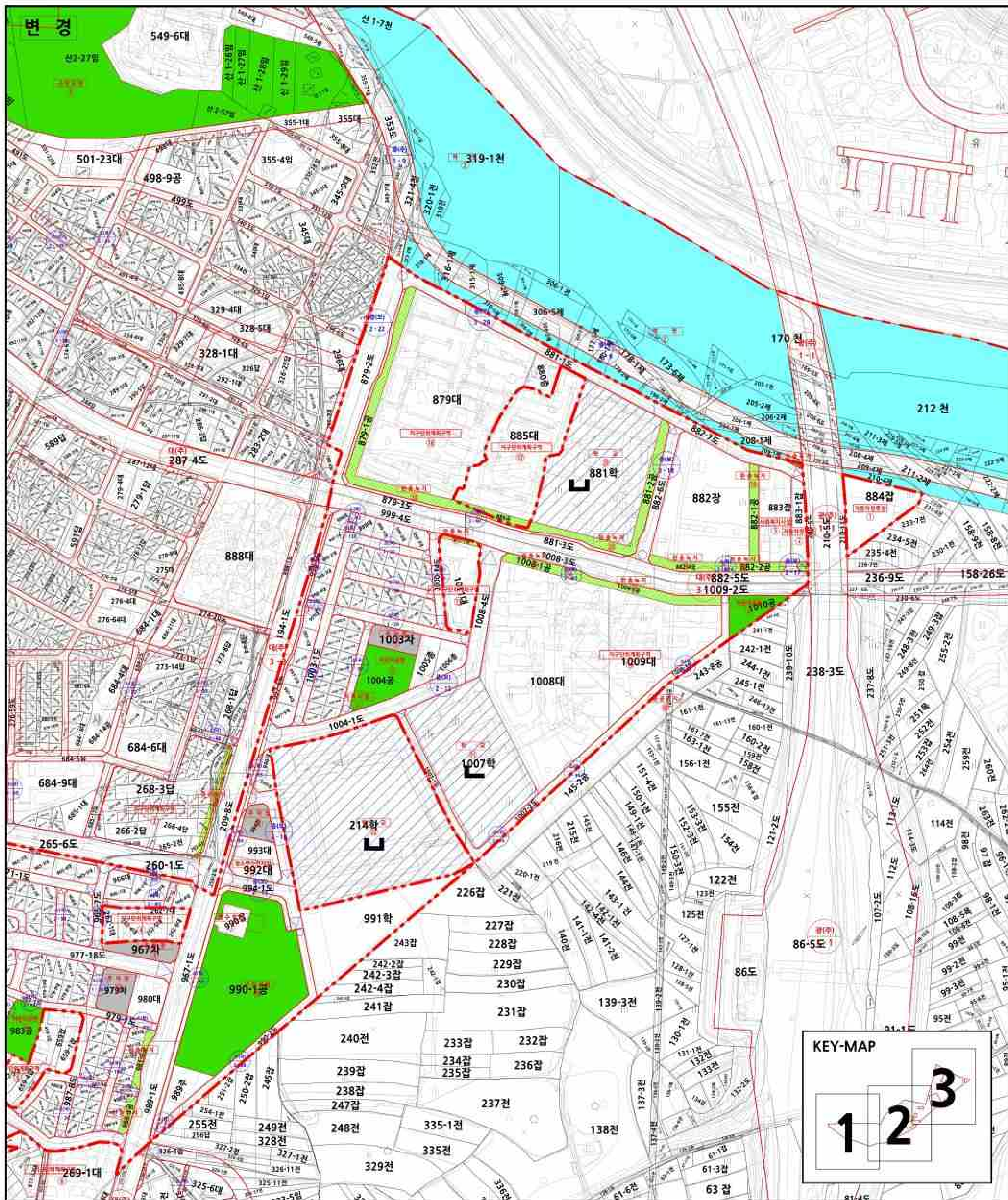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토 평 지구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Scale = 1:2,000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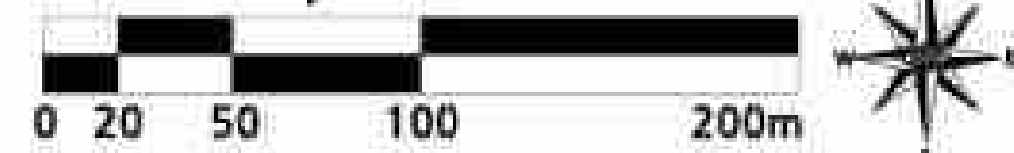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완충녹지, 경관녹지
- 공원
- 주차장
- 학교
- 도로
- 도시계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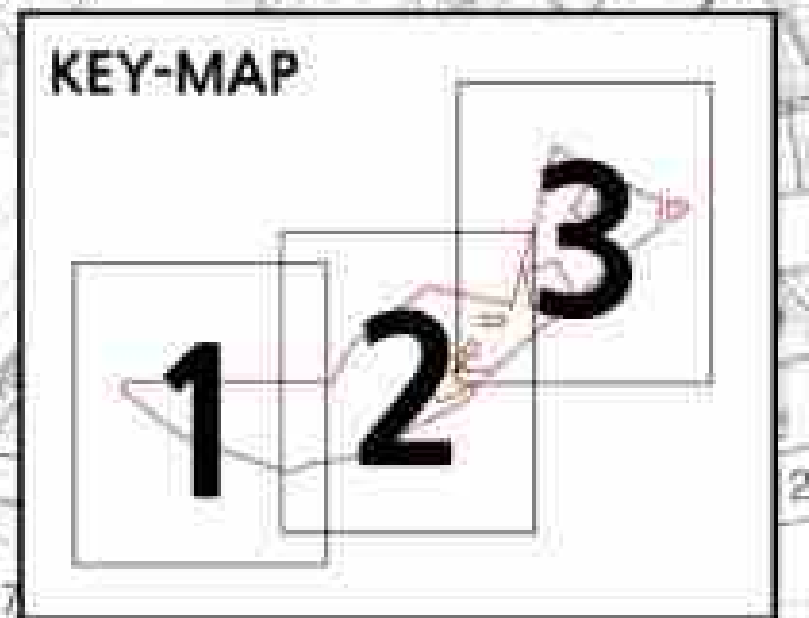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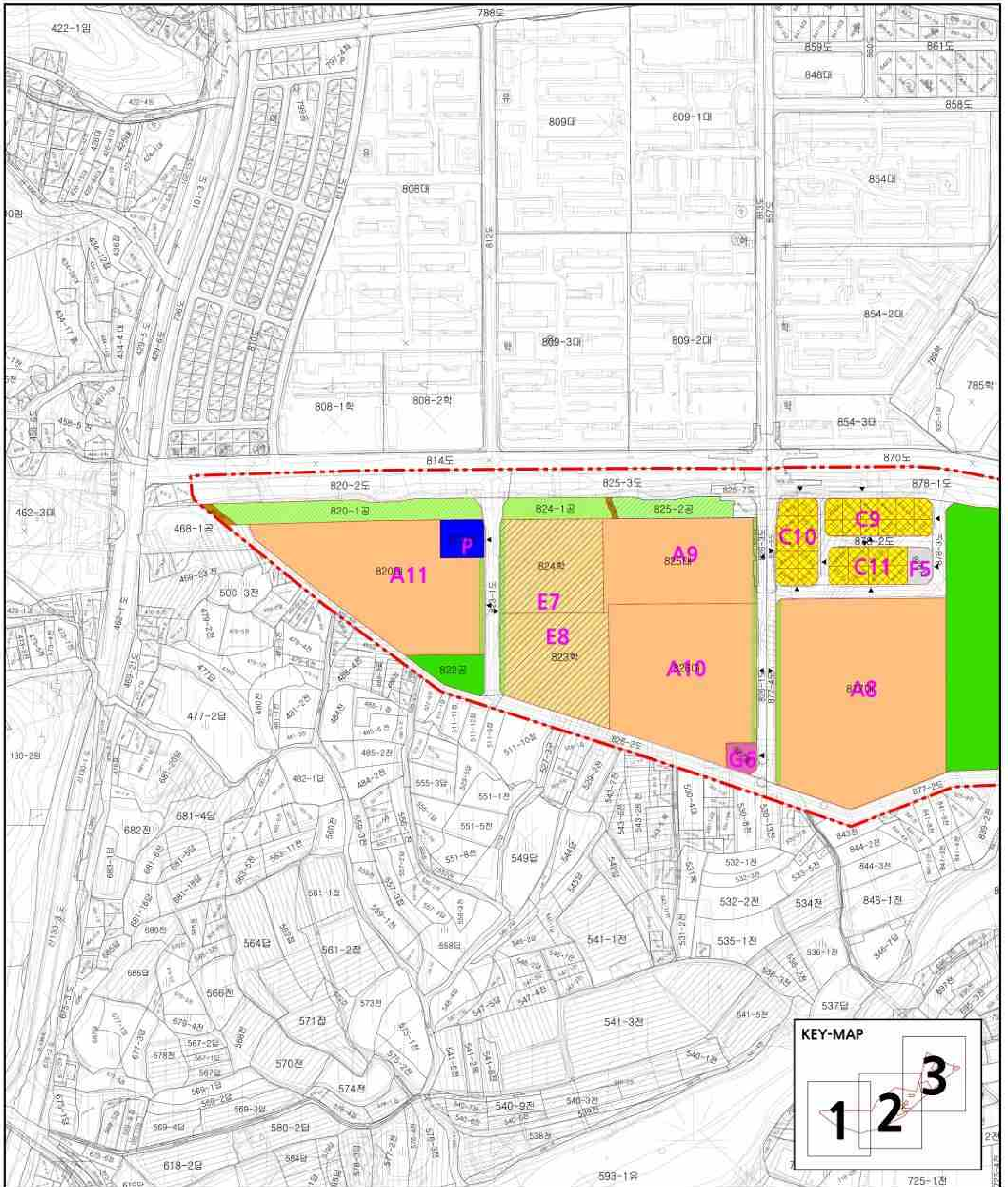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토 평 지구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Scale = 1:2,000





■ 범례

- 단독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사회복지시설
- 문화시설
- 학교
- 공원
- 완충녹지
- 주차장
- 업무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 주유소
-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종교시설
- 기타시설용지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청사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내부조경 (폭원5m수림대)
-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최고층수규제구간

■ 가구 및 획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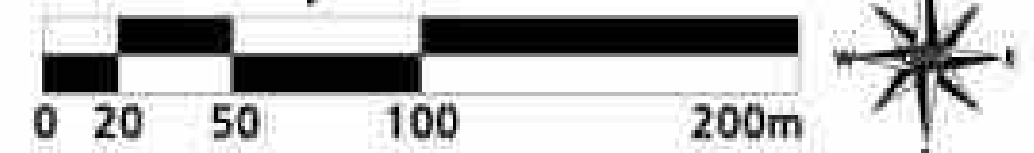
구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단독주택 용지	B1-B17	방화 벽면연화벽 대용하고 공동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4세대)에서 획지간 일명, 허용 (특히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명된 획지경계로 분할)
공동주택 용지	A1-A12	
근린생활 시설용지	C1-C12, C14	
공공시설 용지	D1, E1, E3, E5-E8, F1-F6, G1-G7, H1-H2, I, J, M, P	방화 벽면연화벽 대용하고 공동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4세대)에서 획지간 일명, 허용 (특히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명된 획지경계로 분할)
기타시설 용지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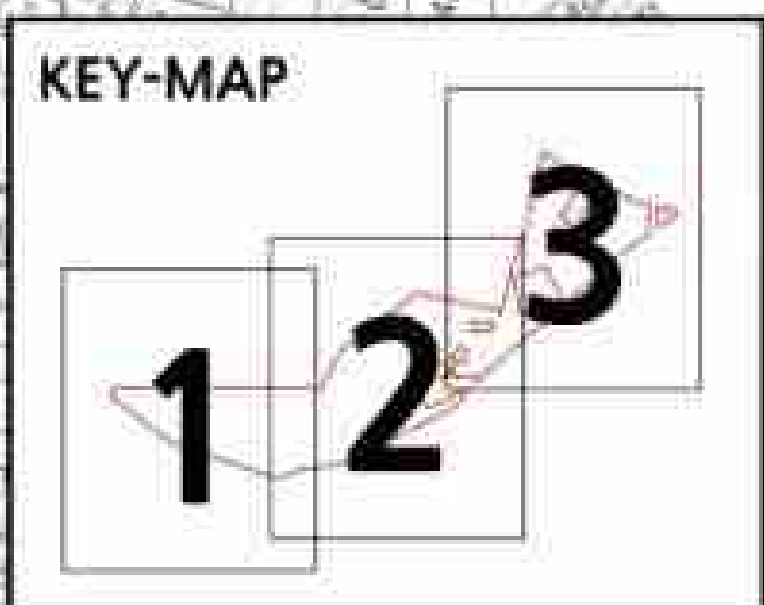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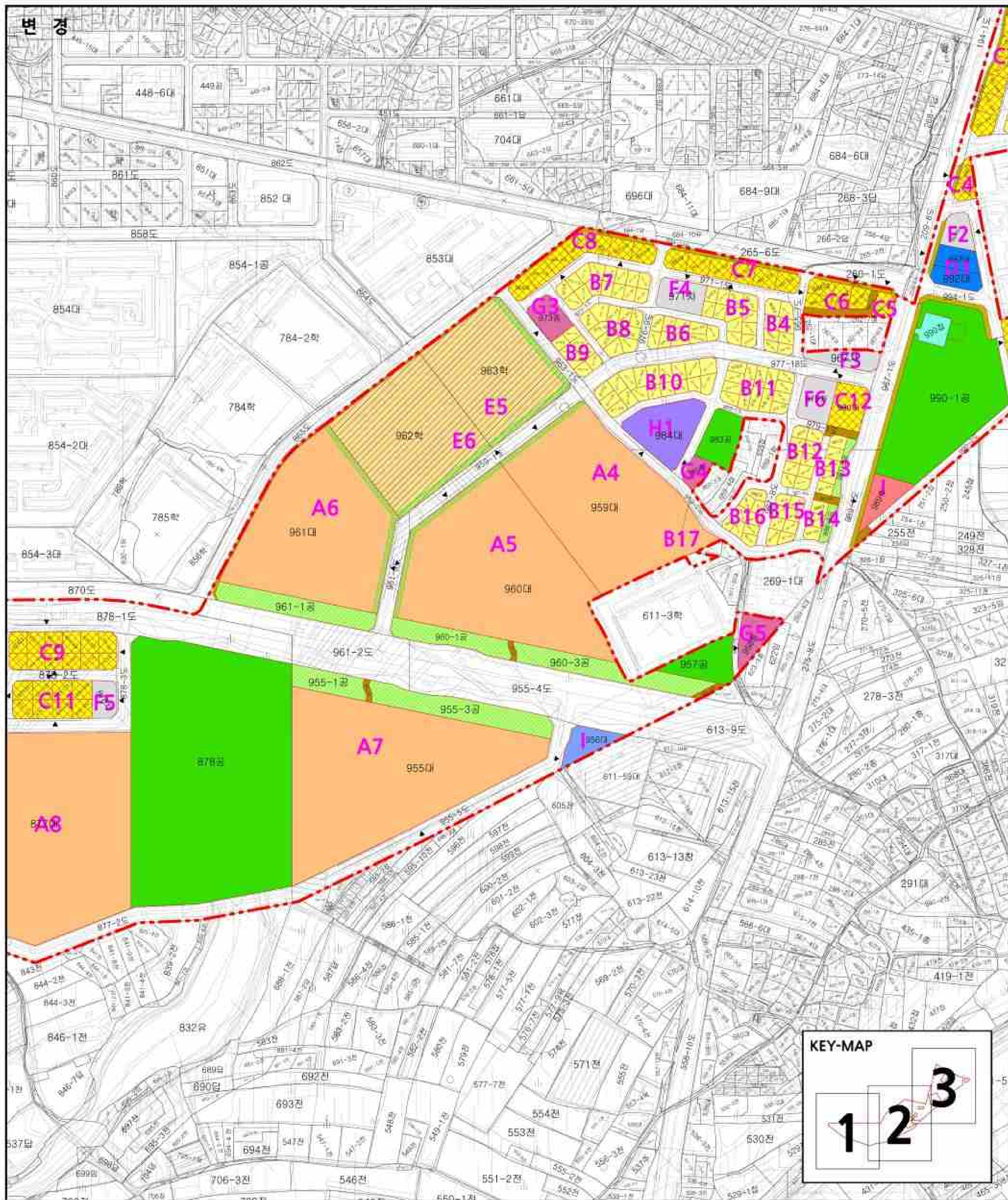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토 평 지구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Scale = 1:2,000





■ 범례

- 단독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사회복지시설
- 문화시설
- 학교
- 공원
- 완충녹지
- 주차장
- 업무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 주유소
-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종교시설
- 기타시설용지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청사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내부조경 (폭원5m수림대)
-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최고층수규제구간

- 방재시설
- 종교시설
- 기타시설용지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청사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내부조경 (폭원5m수림대)
-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최고층수규제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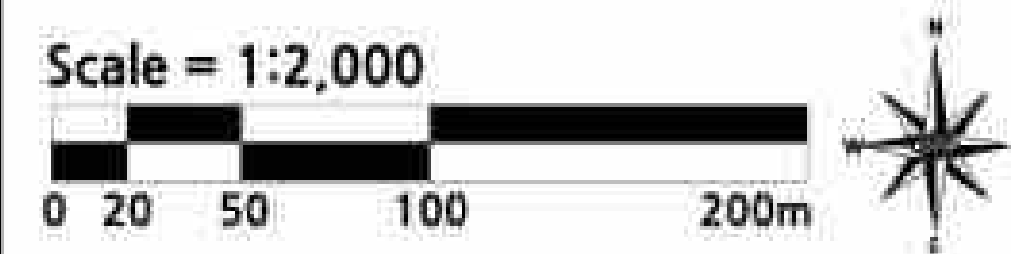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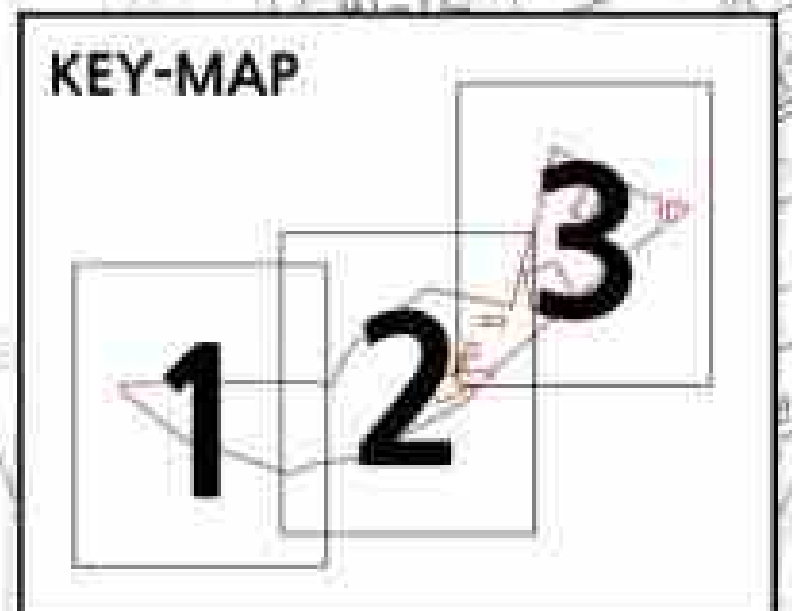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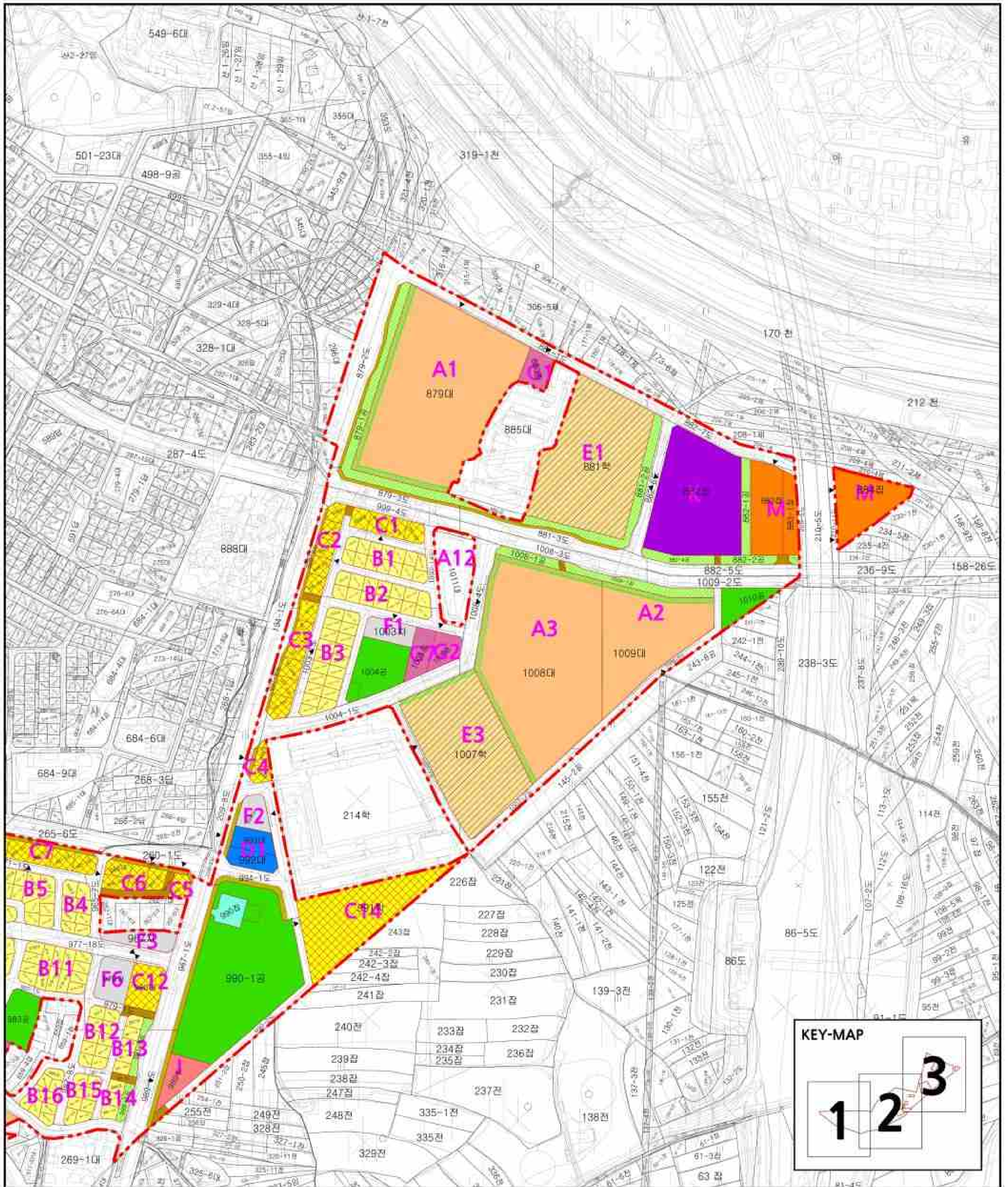
구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단독주택 용지	B1~B17	합부 이전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4에서 획지간 일명 허용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변한 획지경계로 분할)
공동주택 용지	A1~A12	
근린생활 시설용지	C1~C12, C14	
공공시설 용지	D1, E1, E3, E5~E8, F1~F6, G1~G7, H1~H2, I, J, M, P	합부 이전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4에서 획지간 일명 허용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변한 획지경계로 분할)
기타시설 용지	K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토 평 지구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범례

- 단독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사회복지시설
- 문화시설
- 학교
- 공원
- 완충녹지
- 주차장
- 업무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 주유소
-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종교시설
- 기타시설용지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청사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내부조경 (폭원5m수림대)
-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최고층수규제구간

- 방재시설
- 종교시설
- 기타시설용지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청사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내부조경 (폭원5m수림대)
-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최고층수규제구간

■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단독주택 용지	B1~B17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내에서 획지간 일명 허용 (획지별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행한 획지정제로 보함)
공동주택 용지	A1~A12	
근린생활 시설용지	C1~C12, C14	
공공시설 용지	B1, E1, E3, E5~E8, F1~F6, G1~G7, H, L, M, P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내에서 획지간 일명 허용 (획지별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행한 획지정제로 보함)
기타시설 용지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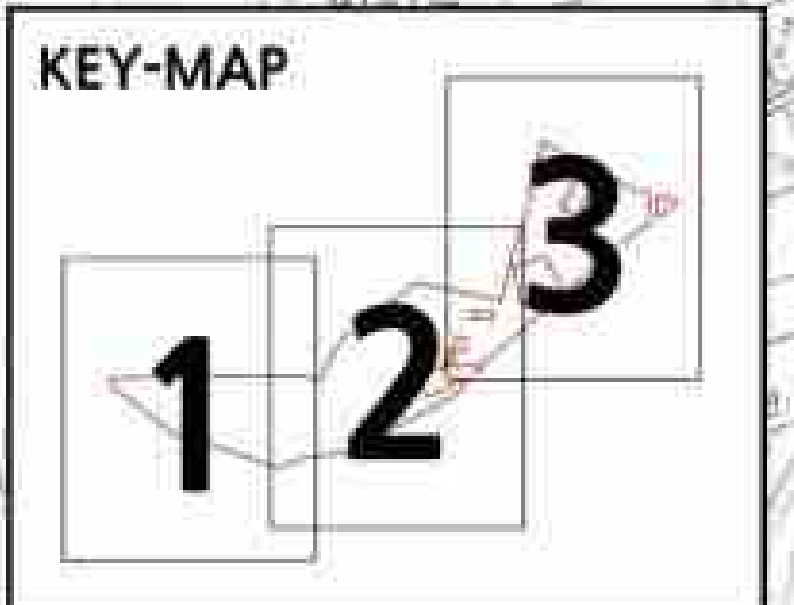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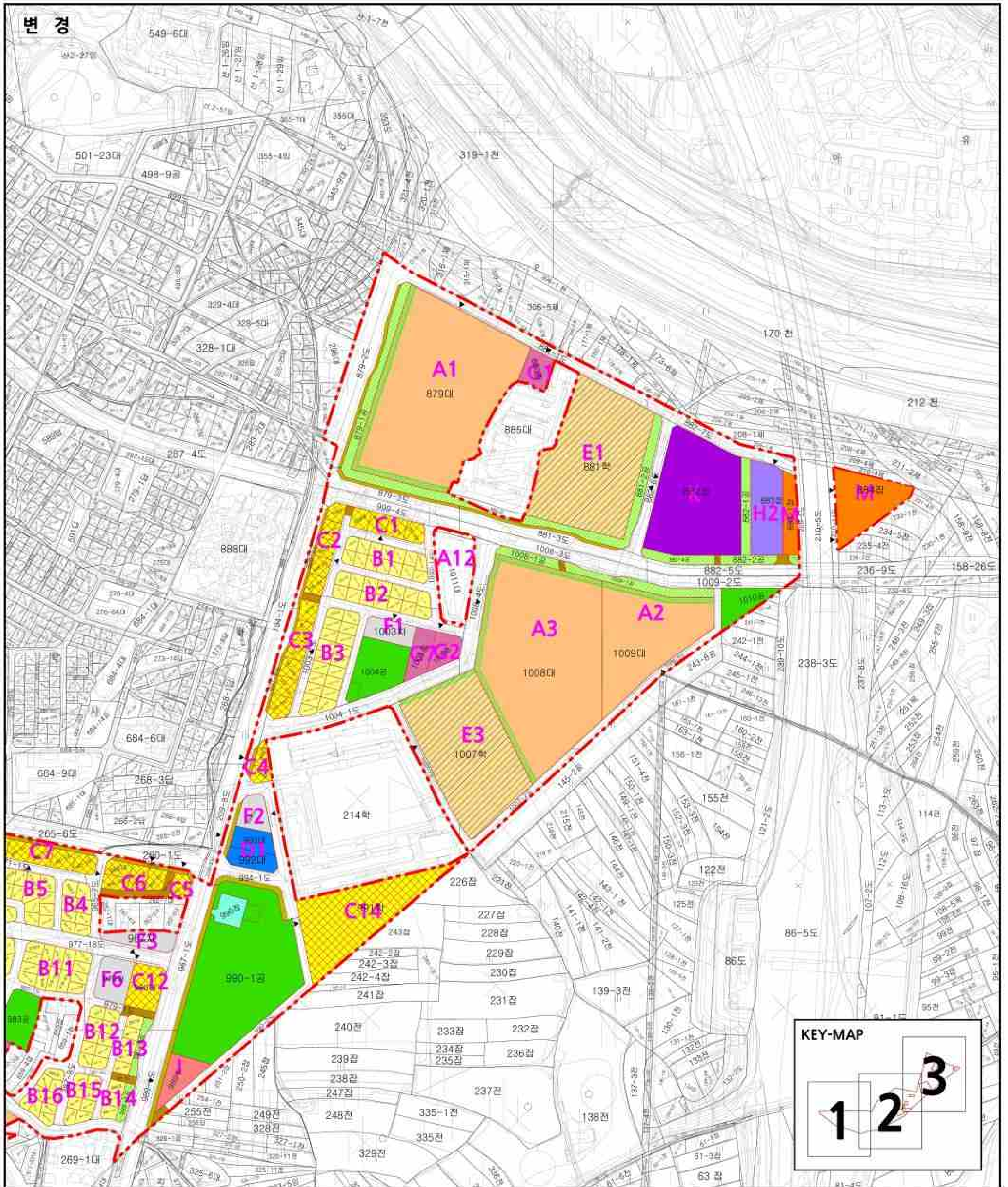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토 평 지구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Scale = 1:2,000





■ 범례

- 단독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사회복지시설
- 문화시설
- 학교
- 공원
- 완충녹지
- 주차장
- 업무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 주유소
-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종교시설
- 기타시설용지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청사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내부조경 (폭원5m수림대)
-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최고층수규제구간

■ 가구 및 획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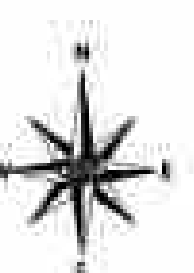
구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단독주택 용지	B1-B17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내에서 획지간 일명 허용 (획지별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행된 획지정제로 보함)
공동주택 용지	A1-A12	
근린생활 시설용지	C1-C12, C14	
공공시설 용지	D1, E1, E3, E5-E8, F1-F6, G1-G7, H1-H2, L1, M, P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내에서 획지간 일명 허용 (획지별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행된 획지정제로 보함)
기타시설 용지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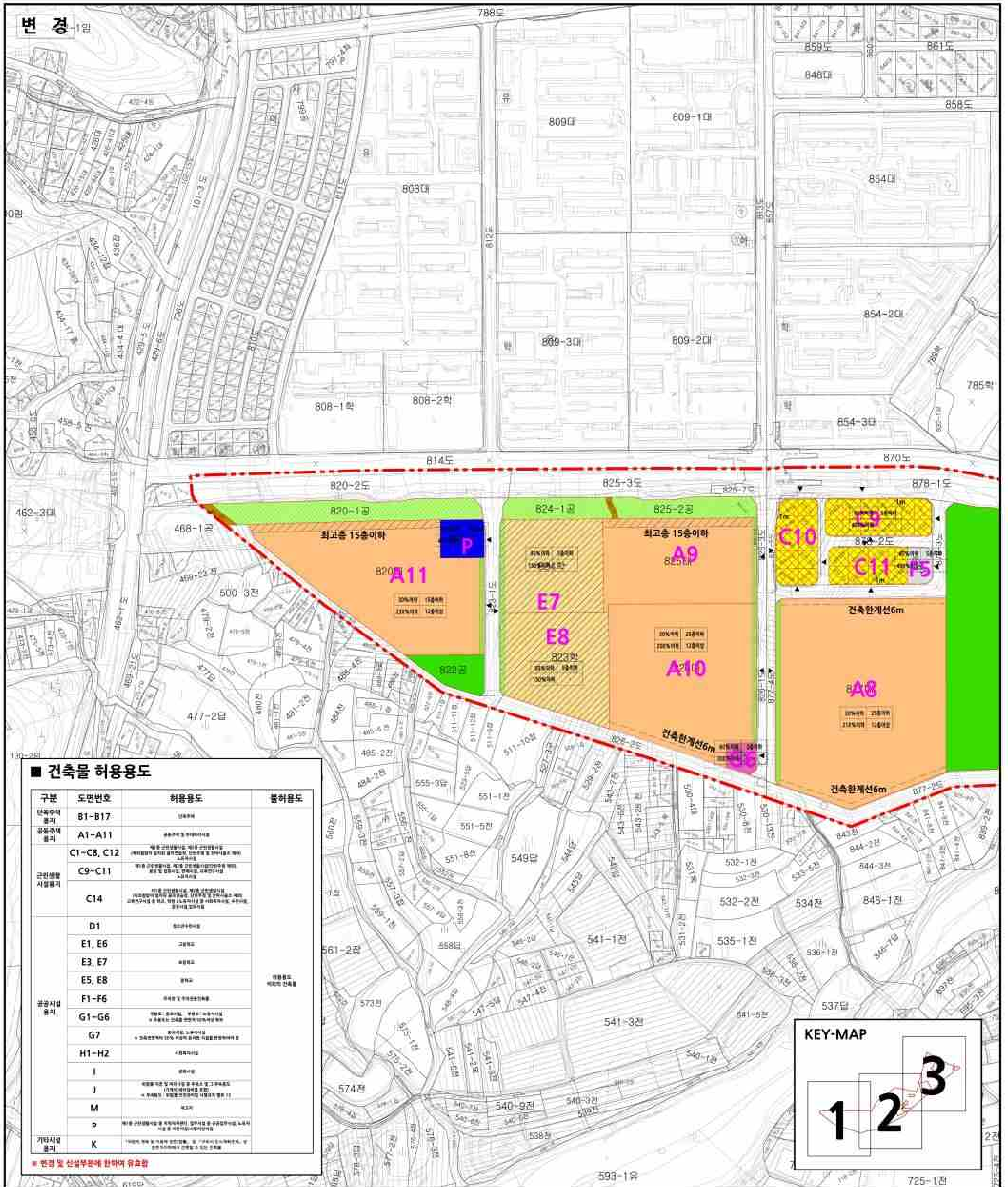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토 평 지구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Scale =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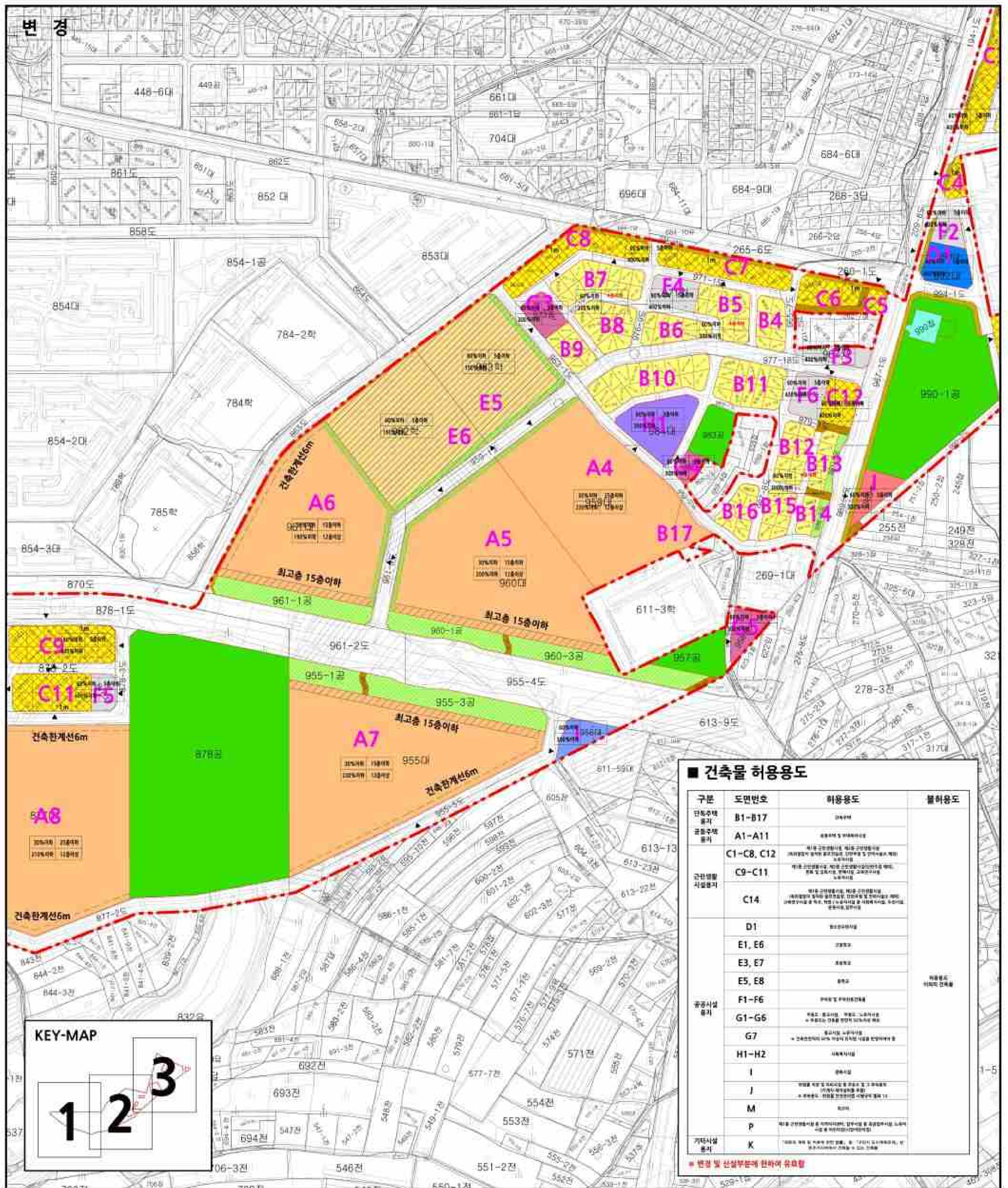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건축한계선
 - 최고층수규제구간

토 평 지구 (1)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Scale = 1:2,000





■ 건축물 허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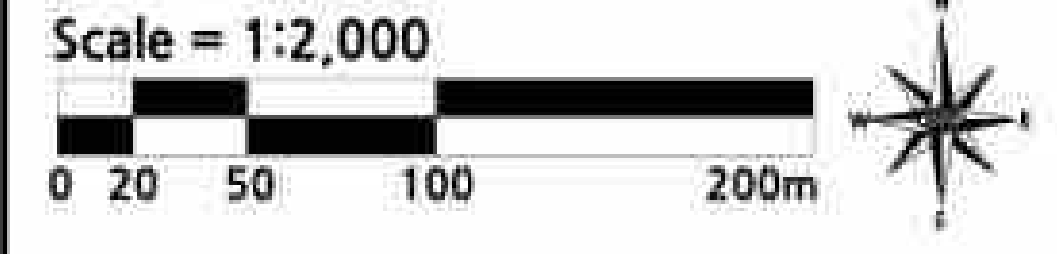
구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용지	B1-B17	다세대주택	
	A1-A11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C1-C8, C12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공동주택 사설용지	C9-C11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C14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D1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공공시설 용지	E1, E6	공공시설	
	E3, E7	공공시설	
	E5, E8	공공시설	
	F1-F6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G1-G6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G7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H1-H2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I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J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M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기타시설 용지	P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K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구역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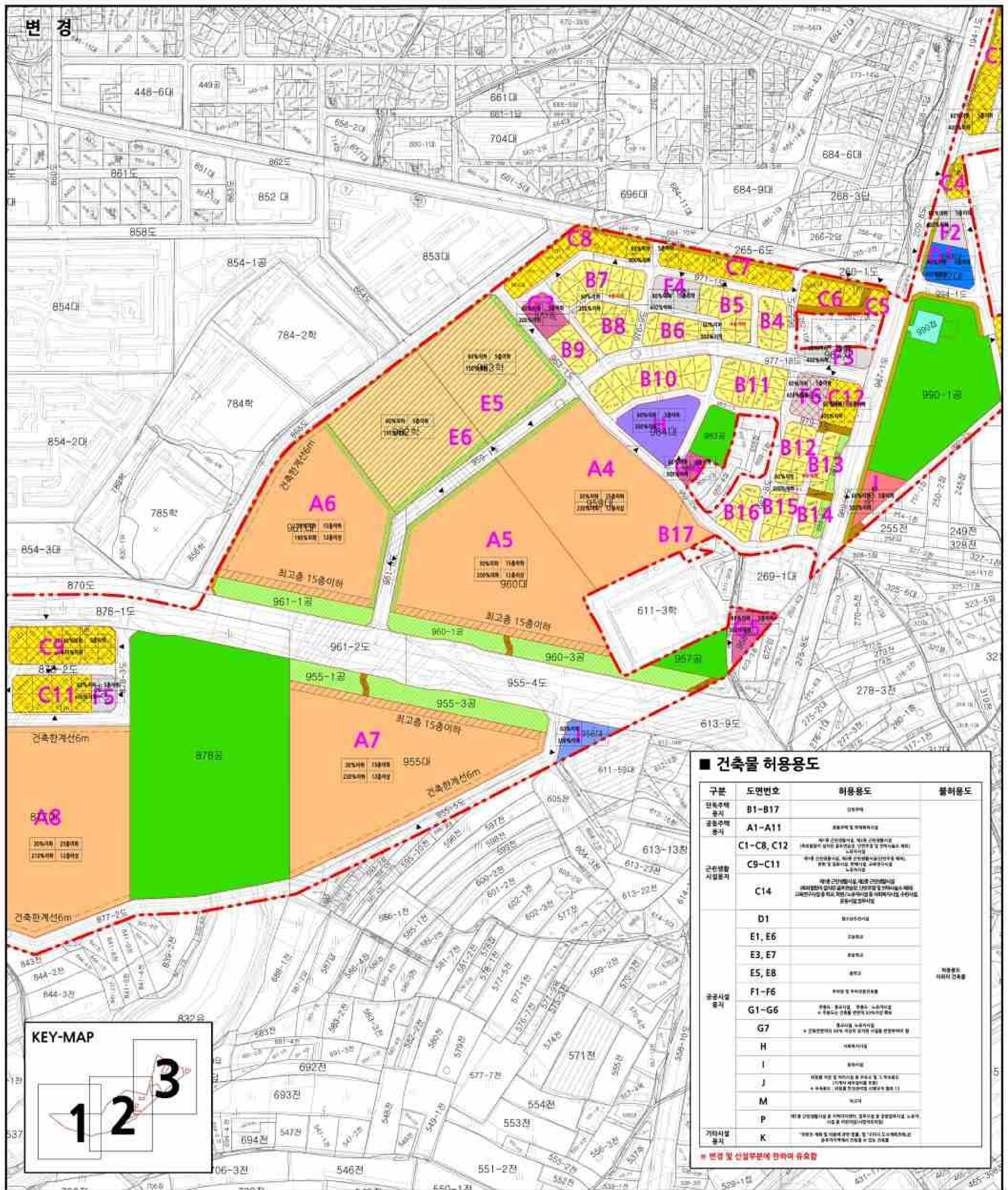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건축한계선
 - 최고층수규제구간

토 평 지구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경계선
 차량출입허용구간
 건축한계선
 최고층수규제구간



■ 건축물 허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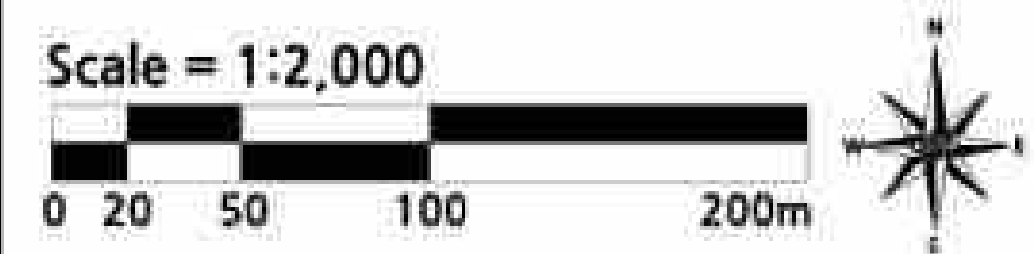
구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용지	B1-B17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지	A1-A11	공동주택 및 사업용시설	
근린생활 시설용지	C1-C8, C1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생활시설 부속인 공동주거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시설) 제3종 근린생활시설, 제4종 근린생활시설(도량형판매시설 제외), 문화·체육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숙자숙박시설	
	C9-C1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생활시설 부속인 공동주거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시설 제외),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체육시설, 노숙자숙박시설	
	C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생활시설 부속인 공동주거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시설 제외),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체육시설, 노숙자숙박시설	
	D1	연구실험시설	
	E1, E6	공업용도	
	E3, E7	공업용도	
	E5, E8	공업용도	
	F1-F6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부속용도	
공공시설 용지	G1-G6	주요도로, 도시공원,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 주공시설, 공공시설,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 주공시설, 공공시설,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G7	주공시설, 노숙자숙박시설 + 주공시설, 공공시설,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H	주공시설	
	I	주공시설	
	J	주공시설,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 주공시설, 공공시설,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M	주공시설	
	P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체육시설, 노숙자숙박시설 + 주공시설, 공공시설,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기타시설 용지	K	주공시설,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 주공시설, 공공시설, 방화선, 노숙자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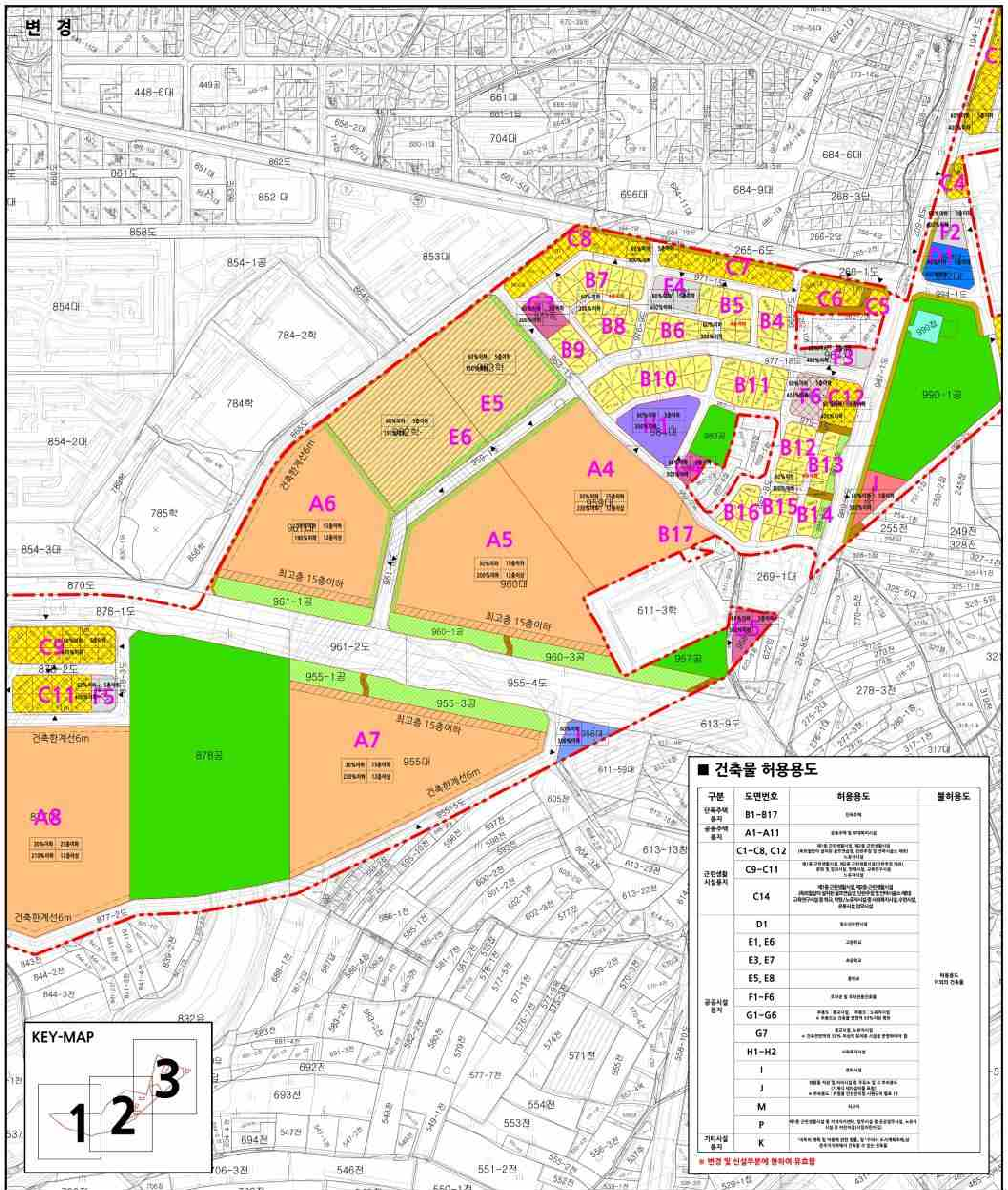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건축한계선
 - 최고층수규제구간

토 평 지 구 (2)

총 합 지 침 도(기정)





■ 건축물 허용용도

구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공주택 공동주택 기타시설	B1-B17	단독주택	
	A1-A11	공동주택 등 주거용지시설	
	C1-C8, C1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편의시설, 편의시설 및 편의시설 제외) 노숙자시설	
	C9-C1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제외) 사무소 또는 연구소, 작업소, 교육연구시설 노숙자시설	
공공시설 문화	C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편의시설, 편의시설 및 편의시설 제외) 사무소 또는 연구소, 작업소, 교육연구시설 노숙자시설	
	D1	문화공연시설	
	E1, E6	교육연구	
	E3, E7	문화연구	
	E5, E8	문화	
	F1-F6	문화 및 여가문화시설	
	G1-G6	문화, 교육시설, 문화, 교육시설 + 문화시설, 교육시설, 문화, 교육시설	
	G7	문화, 교육시설 + 문화시설, 교육시설, 문화, 교육시설	
	H1-H2	문화연구시설	
	I	문화시설	
	J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M	문화	
기타시설 문화	P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지시설,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시설, 노숙자 시설 등 주거용지시설	
	K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지시설,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시설, 노숙자 시설 등 주거용지시설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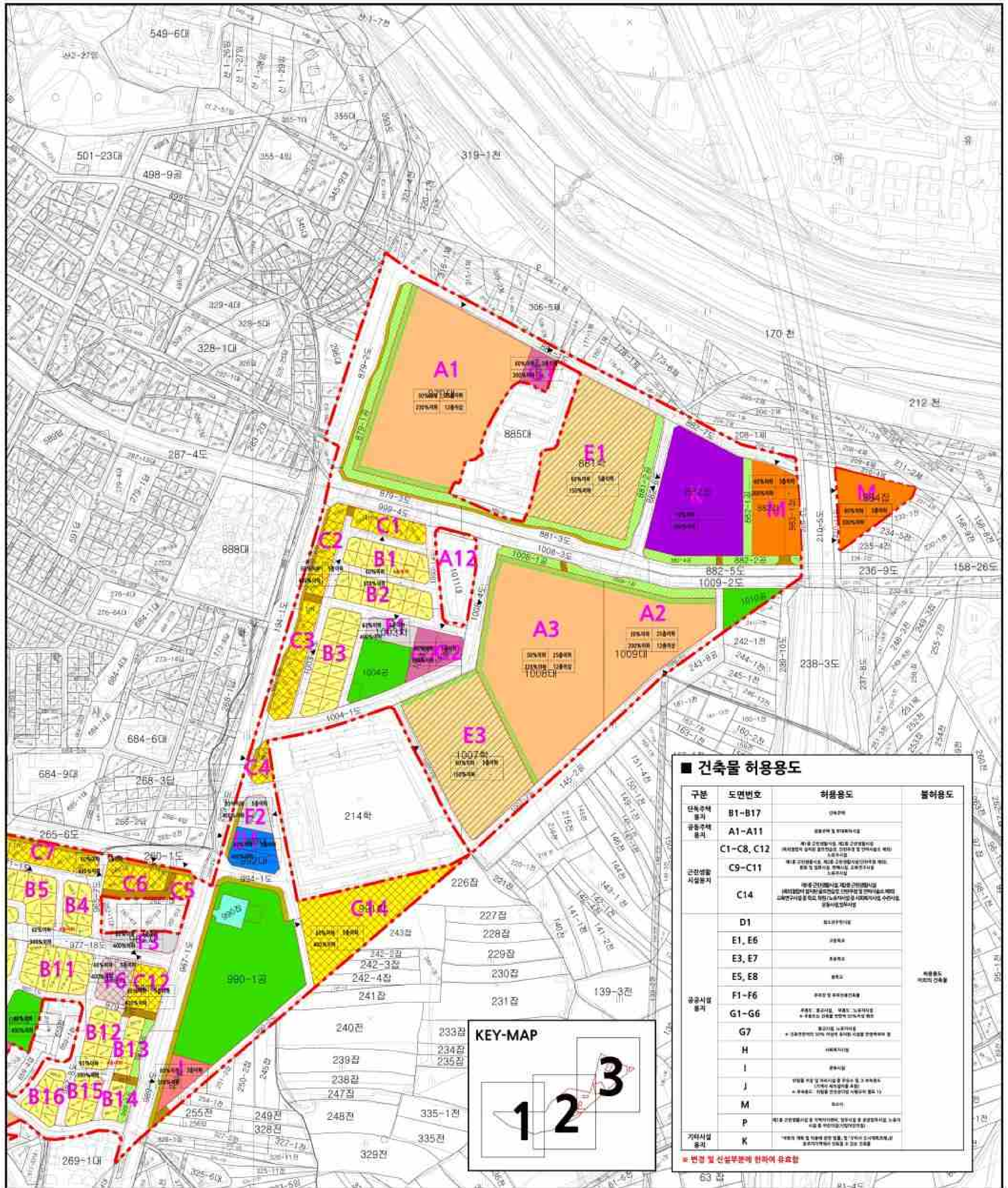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건축한계선
 - 최고층수규제구간

토 평 지 구 (2)

종 합 지 침 도(변경)

Scale = 1:2,000





■ 건축물 허용용도

구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종지	B1-B17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지	A1-A11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제출 후 공인중개사업무를 마친후에 실시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계획)	
공인생활 시설종지	C1-C8, C1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제출 후 공인중개사업무를 마친후에 실시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계획	
	C9-C1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제출 후 공인중개사업무를 마친후에 실시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계획	
	C14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제출 후 공인중개사업무를 마친후에 실시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계획	
공공시설 종지	D1	학교(유치원)	
	E1, E5	공공체육	
	E3, E7	공공문화	
	E5, E8	공공의료	
	F1-F6	주요한 공공시설(공공기관)	
	G1-G6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G7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H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I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J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M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P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기타시설 종지	K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요한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차량출입허용구간
 - 건축한계선
 - 최고층수규제구간

토 평 지 구 (3)

종 합 지 침 도(기정)

Scale = 1:2,000

